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에서 각 대학원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학과는 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구비서류 및 입학전형료)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
 - 가. 입학지원서
 -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라. 학업계획서
 -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 학과)
 - 바. 간호사 면허증(전문 간호사과정에 한함)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
 - 나. 석사학위(예정)증명서
 - 다.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라. 연구계획서
 - 마.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입학전형) 제3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외국인전형은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구술고사(면접심사)로 한다.

제4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술고사) ① 구술고사(면접심사)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의를 기본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술고사(면접심사) 성적배분비율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기준) 입학전형의 합격기준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합격의 결정) 각 대학원장은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

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등록) ①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는 지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자에 대하여 등록확인예치금(등록금의 10%이내)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치금을 반환한다.

제9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 학기는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편입학 전형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려고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은 후 재입학금과 함께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등 록

제11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③ 연구등록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이 학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하는 등록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④ 학점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 4 장 교과이수

제 1 절 개강교과목 제출 및 수강신청

제12조(개강교과목제출) 학과장은 매 학기 개강과목일람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공통교과목,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요청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14조(수업 등)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 기일 내에 전공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이 학기별 한 명의 교수에게 한 과목 이내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연구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원의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⑤ 재수강 교과목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NA(Non Account)로 표기하고 R(Retake)로 표기한다.

제16조(수강신청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9학점(전문간호사과정은 12학점)

나. 박사학위과정: 12학점

다. 통합과정: 12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제17조(타 학과 교과목수강) ①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외에 타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이수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6학점, 통합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9학점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본교 각 대학원 간 교과목수강) ① 학생은 소속학과(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이수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6학점, 통합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9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은 개강 2주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를 확정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는 학기당 대학원 교과목을 2과목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3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강사임용) 강사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강사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전산입력하고 수강대상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

제22조(휴강 및 보강)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을 하였을 경우에 담당교수는 휴·보강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수강학생에게 공고한 후 정해진 시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과목이수 및 이수학점

제23조(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 과정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다.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2. 특수대학원: 24학점 이상

3.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대체자는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동일 및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전적대학원의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6학점

2. 박사학위과정: 9학점

제23조의2(수업연한 단축) 학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통합과정 학생으로서 수료최소이수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 3 절 보충과목

제24조(보충과목 이수) 각 대학원의 입학자 중 대학의 전공학과와 석, 박사학위과정의 전공학과가 다른 입학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1. 보충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개설된 하위 학위과정 과목 중 필수적인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교과목을 선정하고 학과장은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보충과목은 학기별 6학점, 정규학기 내 2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3. 보충과목은 2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기별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 이수 인정학점 24학점 중 9학점을 초과하여 보충과목을 수강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보충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대학원의 성적평균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 4 절 편입·재입학의 학점인정

제25조(편입학생의 인정학점)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이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의 심사를 거쳐 2학기 편입생은 9학점 범위 내, 3학기 이상 편입생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1.>

제26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5 절 성 적

제27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하여 **절대평가**하고, 이에 해당되는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o	90 - 94	4.0
B ⁺	85 - 89	3.5
B ^o	80 - 84	3.0
C ⁺	75 - 79	2.5
C ^o	70 - 74	2.0
F	0 - 69	0.0

② 성적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N(Non Pass)로 평가하되, 성적 평점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27조의2(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학사일정에 의거 중간강의평가와 기말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당해 학기 성적 공시기간 동안 성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 및 기말 강의평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강의평가 여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의3(성적철회) ① 석·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 중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성적철회는 공고된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적철회가 승인된 교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 및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8조(출결) ① 학생이 해당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수의 4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결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호	사유	일수	증빙서류
1	본인 결혼	7	가족관계확인서류, 청첩장
2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결혼	1	
3	본인 출산	20	출생 관련 증빙 서류
4	배우자 출산	5	
5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류
6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호	사유	일수	증빙서류
7	입원치료 ¹⁾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8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¹⁾²⁾	최대 3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중 택일)
9	정병검사 또는 정소집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10	학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참가확인관련 증빙서류 또는 학과장 인정 서류
11	해당교과목의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학과장 인정 서류
12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또는 관련 부서 처장의 승인 서류
13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14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15	폐강으로 수강정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	폐강과목확인서
16	개강 후 군제대 복학자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1) 입원상태는 아니지만(외래진료) 독감 및 전염성 질병(격리) 등인 경우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연속결석일수를 1회로 본다.
2)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시 동일한 질병의 진단서로 중복 신청 및 출석인정 일수의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3) 기타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일 기준 2주전까지 대학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공인결석을 한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 발생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 출결인정을 신청하면 해당기간 내 교과목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

제 5 장 논문지도

제29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 교수의 자격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전임교원은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기관(타대학교, 산업체, 연구소 등)의 대학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을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 지도교수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외부기관의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지도교수와 같이 담당학생의 논문연구지도를 담당한다.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시기) 논문지도교수의 지정은 입학학기 내에 학과장의 제청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 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조삭제 2024.9.1.>

제 6 장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3조(시험 종류)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4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 정한 학사일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4.9.1.>
2. 박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4.9.1.>
3. 통합과정에서 30학점 이상(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4.9.1.>
-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종합시험 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하고, 3과목 이상으로 한다.
- ④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단, 온라인석사학위과정은 과제 또는 온라인시험으로 한다.
- ⑤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⑥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 ⑦ 종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학과에서 5년간 보관한다.
- ⑧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⑨ 통합과정의 유형2로 선발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 중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한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합격기준이 동일한 종합시험 과목에 한한다.

제3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자로 한다.

- ② 외국어시험(영어 및 한국어)은 본교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 강좌 수강 또는 외부공인 시험으로 대체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로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외국어시험 합격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 통합과정의 유형2로 선발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 중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제37조(비용징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각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청구논문

제3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2. <호 삭제 2024.9.1.>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자. 다만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자
5.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6. 문장유사도검증결과 1부

②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2. <호 삭제 2024.9.1.>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자
5.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6.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7. 문장유사도검증결과 1부

③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전주에 연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부
 -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심사용) 3부
 - 라. 연구윤리서약서(별지서식) <신설 2024.9.1.>
2. 박사학위과정
 - 가.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부
 - 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다. 학위청구논문(심사용) 5부
 - 라. 연구실적증명서
 - 마. 연구윤리서약서(별지서식) <신설 2024.9.1.>

제40조(학위청구논문 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7월(후기)과 1월(전기)로 한다.

제40조의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박사학위과정: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

다. 통합과정: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

2. 특수대학원: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② 휴학기간은 제1항의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논문접수 심의) 학위청구 논문이 제출되면 각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인준, 청구 논문의 제목 및 내용 등을 심의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을 둔다. 다만, 필요시에는 최대 1인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 등의 권위자를 포함해 대학원장이 승인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을 둔다. 다만,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또는 유사전공의 타학과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의 심사)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3회 이상으로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논문평가는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학위과정 논문평가는 심사위원 4/5 이상의 의결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44조(논문의 제목변경) 학위청구논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5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 또는 그 이후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심사용 논문) ① 심사용 논문은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최종 제출논문은 규격 및 형식(체제)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학위논문 심사료 납부) ①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심사 신청 시 소정의 학위청구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8조(완성논문제출) ①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부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 삭제 2024.9.1.>

제8장 석사과정 논문대체

제49조(대체신청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3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수료생 중 수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5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 인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0조(대체인정 요건) 학위청구논문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5학기 등록 후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제35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
3.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연구 교과목은 인정학점에서 제외한다.

제50조의2(기수료생의 논문대체 요건) ① 일반 및 특수대학원 기수료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논문대체를 인정한다.

1. 추가 학기 등록 후 최소 6학점을 이수한 자. 단,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연구 교과목은 제외한다.
 2. 해당 대학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 ② 논문대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위수여

제51조(학위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제52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2월과 8월 연 2회로 한다.

제53조(학위논문 공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포되었거나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0 장 장학금

제54조(장학금지급)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기준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1 장 외국인 유학생

제55조(외국인 유학생의 범위)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학생을 말하며,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제56조(지원자격)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후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가능한자

제57조(선발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8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제35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59조(한국어능력시험) 외국인유학생은 졸업시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2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60조(공개강좌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할 때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61조 <조 삭제 2024. 9.1.>

제 13 장 보칙

제62조(수당지급 기준)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관련 문제 출제 및 채점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지도하는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간호대학원학칙시행세칙과 보건과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의 4호, 제50조의 4호의 개정 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에게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제28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2항의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전기 박사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학과 과목수강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 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영어강좌 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 시행세칙은 2016학년도 강좌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어능력시험) 제62조 개정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연구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3항의 연구등록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수료생의 논문대체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의 개정 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소급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점수

TOEFL			TOEIC	TEPS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본교 영어강좌 (3학점)
PBT	CBT	IBT				
535	207	76	700	600	4급 이상	P (60점 이상)
<p>*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외국인에 한함</p>						

연구윤리 서약서

본인은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2. 논문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20 . . .

학위과정명 :

학 과 :

성 명 :

(서명)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